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제1장 개요

I. 총괄	3
II. 세입·세출 결산	4
1. 세입결산	4
2. 세출결산	6
III. 통합재무제표	15
1. 재정상태표	15
2. 재정운영표	17
3. 순자산변동표	19
IV. 성과보고서	21
1. 성과체계	21
2. 2024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22

제2장 검토의견

1.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의 정확성 제고 필요	22
2.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출연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 자문료 지급 부적절	26
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31
(1) 하위법령 제·개정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 부적절	33

(2)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의 과기부 사업과의 차별성 제고 필요	41
4. 개인정보 침해방지: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통합 발주시 비목별 집행실적 반영 필요	48
5. 위원회 법무지원: 예산 소진 목적의 연말 예산 집행 지양 필요	51

제1장 개요

I. 총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84억 6,800만원(△20.7%) 감소한 323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1억 3,900만원(△73.8%)이 감소함.

○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1억 4,000만원(1.7%) 감소한 650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억 800만원(14.2%)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회계연도			전년도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현액 (A)	결산액 (B)	집행률 (B/A)		
□ 세입결산	40,834	32,366	79.3	123,505	△73.8
○ 일반회계	40,834	32,366	79.3	123,505	△73.8
□ 세출결산	66,203	65,063	99.5	56,955	14.2
○ 일반회계	66,203	63,063	99.5	56,955	14.2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I.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08억 3,400만원이며, 결산은 572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23억 6,600만원(예산 현액 대비 79.3%)을 수납하고, 248억 5,100만원은 미수납됨.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수납액 (B-C)	불납 결손액
기타재산 이자수입	15	324	324	100.0	-	-
과태료	737	1,376	612	44.5	720	44
과징금	38,800	53,843	29,768	55.3	24,075	-
위약금	1	335	335	100.0	-	-
가산금	7	65	3	4.6	56	6
기타경상 이전수입	1,272	1,323	1,323	100.0	-	-
면허료 및 수수료	1	-	-	-	-	-
계	40,834	57,267	32,366	56.5	24,851	5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연금 등 정산 잔액 반납에 따른 기타재산 이자수입 3억 2,4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13억 2,300만원을 수납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과징

금, 가산금 중 과태료 수입으로 6억 1,200만원, 과징금 297억 6,800만원, 가산금 3억을 수납하였음.

- 미수납액 248억 5,100만원은 납기미도래(232억 4,800만원),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 임의체납(10억 2,500만원), 징수유예(5억 7,800만원) 등에 따른 것임.

2. 세출결산

1) 총괄

□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62억 300만원으로, 결산은 이 중 98.3%에 해당하는 650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지출액 140억 5,300만원, 주요사업비 지출액 489억 400만원, 기본경비 21억 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66,203	65,063	98.3	-	1,140
□ 인건비	14,544	14,053	96.6	-	491
□ 기본경비	2,295	2,106	91.8	-	188
□ 주요사업비	49,364	48,904	99.1	-	46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인건비

□ 2024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45억 4,400만원 중 96.6%인 140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4%인 4억 9,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인건비 합계	14,544	14,053	96.6	-	491
□ 보수(110-01)	13,967	13,524	96.8	-	443
□ 기타직보수(110-02)	468	447	95.5	-	21
□ 연가보상비(110-05)	109	82	75.2	-	27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기본경비

□ 2024회계연도 기본경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2억 9,500만원 중 91.8%인 2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2%인 1억 8,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본경비 합계	2,295	2,106	91.8	-	188
□ 인건비(110)	8	8	100.0	-	-
□ 운영비(210)	1,416	1,272	89.8	-	144
□ 여비(220)	167	155	92.8	-	12
□ 업무추진비(240)	193	192	99.5	-	1
□ 직무수행경비(250)	265	248	93.6	-	17
□ 보전금(310)	-	-	-	-	-
□ 건설비(420)	150	137	91.3	-	13
□ 유형자산(430)	96	95	99.0	-	1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 주요사업비

□ 2024회계연도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93억 6,400만원 중 99.1%인 489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0.9%인 4억 6,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9,364	48,904	99.1	-	460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2,878	2,852	99.1	-	26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4,264	4,232	99.2	-	32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964	964	100.0	-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461	1,442	98.7	-	19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3,328	3,328	100.0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7,650	7,650	100.0	-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7,546	7,446	98.7	-	100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R&D)	5,883	5,883	100.0	-	-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1,228	1,228	100.0	-	-
개인정보침해방지	9,412	9,353	99.4	-	59
위원회운영지원	2,214	2,026	91.5	-	188
위원회법무지원	515	487	94.6	-	28
위원회정보화지원(정보화)	2,021	2,013	99.6	-	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 개선,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 분석, 개인정보처리자 교육, 개인정보보호 제도 인식 제고 및 성과 홍보·공유 등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주권을 보장·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 7,800만원 중 99.1%인 28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0.9%인 2,600만원을 불

용처리하였음.

-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은 민간분야 자율규제 촉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2억 6,400만원 중 99.2%인 4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0.8%인 3,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공공·민간 분야 가명처리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기술 등 복합적 능력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6,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기구·해외 감독기관 간 협력 등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이슈 대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6,100만원 중 98.7%인 14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인 1,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 운영 및 법·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3억 2,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연구 및 데이터, 전송방식, 보안·인증 등 상호 호환 가능한 표준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6억 5,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사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하고 전 산업 분야의 마이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5억 4,600만원 중 98.7%인 74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인 1억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개인정보보호강화기술연구개발(R&D)” 사업은 데이터 혁신시대의 데이터 활용 급증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여 개인정보 침해예방 등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8억 8,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활용 표준개발을 통한 글로벌 개인정보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개인정보 기술 생태계 조성, 표준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2,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개인정보침해방지”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조사 및 실태 점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 고유식별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안전조치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4억 1,200만원 중 99.4%인 93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0.6%인 5,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위원회운영지원” 사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체 운영, 개인정보보호 정책 연구 수행 및 포럼·세미나 활동 지원, 개인정보보호 홍보 활동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 1,400만원 중 91.5%인 20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8.5%인 1억 8,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위원회법무지원” 사업은 국가송무수행지원, 법률 서비스 이용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1,500만원 중 94.6%인 4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4%인 2,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위원회운영지원(정보화)” 사업은 위원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억 2,100만원 중 99.6%인 20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0.4%인 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5) 프로그램별 지출내역

☐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프로그램(항) 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프로그램(항)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66,203	65,063	98.3	-	1,140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1000)	35,202	35,025	99.5	-	177
선제적인 개인정보 이슈 대응(2000)	9,412	9,353	99.4	-	59
개인정보보호행정지원(7000)	21,589	20,685	95.8	-	904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 이·전용 내역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전용액은 없음.

7) 이월 내역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없음.

8) 불용 내역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11억 4,4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2024회계연도 주요사업별 불용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 사유
○ 인 건 비	14,544	491	3.4	- 집행잔액
○ 기 본 경 비	2,295	188	8.2	- 집행잔액
○ 주 요 사 업 비	30,311	460	0.9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2,878	26	0.9	- 집행잔액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4,264	32	0.8	- 집행잔액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461	19	1.3	- 집행잔액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7,546	100	1.3	- 집행잔액
개인정보침해방지	9,412	59	0.6	- 집행잔액
개인정보운영지원	2,214	188	8.5	- 집행잔액
개인정보법무지원	515	28	5.4	- 집행잔액
개인정보정보화지원(정보화)	2,021	8	0.4	- 집행잔액
합 계	47,150	1,140	2.4	

III. 통합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산은 380억 3,600만원이고, 부채는 5,400만원이며, 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301억 7,600만원이 증가한 379억 8,200만원이다.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 감	
			금 액 (C=A-B)	비 율 (C/B)
자산합계(a)	38,036	7,861	30,175	383.9
I. 유동자산	24,077	3,151	20,926	664.1
II. 투자자산	-	-	-	-
III. 일반유형자산	942	967	△25	△2.6
IV. 사회기반시설	-	-	-	-
V. 무형자산	13,017	3,742	9,275	247.9
VI.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채합계(b)	54	55	△1	△1.8
I. 유동부채	-	1	△1	100
II. 장기차입부채	-	-	-	-
III. 장기충당부채	54	54	-	-
IV.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a-b)	37,982	7,806	30,176	386.6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산총액은 380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1억 7,500만원 (383.9%)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미수채권 등 유동자산의 증가 (209억 2,600만원)에 있음.
- 부채총액은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1.8%) 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유동부채의 감소(100만원)에 있음.

2. 재정운영표

□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운영결과는 프로그램 순원가 356억 6,900만원 및 관리운영비 234억 9,500만원, 비배분비용 1억 700만원 등을 합산한 576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감	
			금액(C=A-B)	비율(C/B)
I. 프로그램 순원가	35,669	38,723	△3,054	△7.9
1. 프로그램 총원가	35,669	38,723	△3,054	△7.9
2.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23,495	17,628	5,867	33.3
III. 비배분비용	107	164	△57	34.8
IV. 비배분수익	1,648	3,427	△1,779	51.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57,623	53,087	4,536	8.5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57,623	53,087	4,536	8.5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프로그램 순원가는 전년 대비 30억 5,400만원 감소한 356억 6,900만원이며, 이는 연구개발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출연비원가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관리운영비는 전년 대비 58억 6,700만원 증가한 234억 9,500만원이

며, 이는 인건비, 경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비배분비용은 전년 대비 5,700만원 감소한 1억 700만원이며, 이는 기타비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비배분수익은 전년 대비 17억 7,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을 포함한 기타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3. 순자산변동표

□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말순자산은 379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1억 7,6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A)	2023(B)	증감	
			금액(C=A-B)	비율(C/B)
I. 기초순자산	7,806	102,984	△95,178	△92.4308.6
II. 재정운영결과	57,623	53,087	4,536	8.5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7,799	△42,091	129,890	308.6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I-II+III+IV)	37,982	7,806	30,176	386.6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초순자산은 전년 대비 951억 7,800만원 감소한 78억 6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재정운영결과 530억 8,7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20억 9,100만원이 당기 기초순자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45억 3,600만원 증가한 576억 2,300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관리운영비 58억 6,700만원 증가 및 프로그램 순원가 30억 5,400만원, 비배분비용 5,700만원, 비배분수익 17억 7,900만원 감소가 반영되었기 때문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 대비 1,298억 9,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
임.

IV. 성과보고서

1. 성과체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재정법」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작성한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위 기관의 임무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로 국민의 정보주권을 책임진다’로 설정하였음.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비전-전략목표(1개)-프로그램목표(2개)-단위사업(3개)-성과지표(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과관리체계도〉

임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로 국민의 정보주권을 책임진다
비전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	▪ 전략목표 I.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프로그램목표 I-1.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토대로 신뢰하는 데이터 활용을 선도한다. - 프로그램목표 I-2.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2024년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 성과계획서에 따라 2024년도 재정활동 성과를 측정하여 작성한 ‘2024년도 성과보고서’의 1개 전략목표 달성률은 100%임.

〈전략목표 달성 현황〉

전 략 목 표	사업규모 (억 원)	성과지표 실적		
			프로그램목표	단위사업
I.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373	지표 수	2	-
		달성/미달성	2/0	-
		달성률 ¹⁾ / 실적치 평균 ²⁾	100.0%/100.0%	-

주1) (달성지표 수÷전체지표 수)×100

주2) 해당 전략목표의 프로그램 목표와 단위사업 목표의 실적 달성률((실적치÷목표치)×100) 평균값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략목표로 ‘I.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를 설정하고 100%의 실적을 달성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로그램목표 I-1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기반을 조성한다’의 성과지표로 ‘개인정보 보호법·제도 체계 정합성 관련 위원회 검토의견 수용률(%)’을

설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체계 검토 및 개정 의견 제시, 법안 의견 수용 도출 및 유관 부처와 적극적 협의 추진 등을 통해 목표치를 모두 달성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로그램목표 I-2 ‘개인정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한다’의 성과지표로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율(%)’을 설정하고 국내·외 도메인 대상 주기적 모니터링, 온라인상 노출된 개인정보의 신속한 삭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목표치를 모두 달성함.

제2장 검토의견

1. 기타재산이자수입¹⁾: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의 정확성 제고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출연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세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2024년에는 예산액 1,500만원을 3억 900만원 초과한 3억 2,4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전액 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목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기타재산이자수입	15	-	15	324	324	-	-	64

(자료: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 수납액 3억 2,400만원 중 3억 2,000만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비 이자 반납금으로 전체 이자 반납액의 98.8%를 차지함.

〈연도별 출연금 이자반납 내역〉

(단위 : 백만원, %)

년도	전체 이자 반납	KISA 이자 반납	KISA 비율
2022년 반납 (2021년 발생)	17	16	94.1
2023년 반납 (2022년 발생)	163	162	99.4
2024년 반납 (2023년 발생)	324	320	98.8
합 계	504	498	98.8

주: 출연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반영됨.

(자료: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1) 세부사업: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2) 검토의견

- ☐ 동 사업의 최근 결산내역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의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각각 1,086.7%, 2160.0%로 나타나 당초 예산액이 상당히 과소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025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2021	-	13	13	-	100
2022	33	17	17	51.5	100
2023	15	163	163	1086.7	100
2024	15	324	324	2160.0	100
2025	64	-	-	-	-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와 같이 기타재산이자수입이 과소계상된 것은 최근의 출연금 증액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보호위원회의 예산액 산출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이자수입 포함)의 경우, 과다 또는 과소 계상을 방지하고 예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몇 년간의 수납실적(통상 3개년 평균)을 참고하여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보호위원회도 처음 기타재산이자수입을 편성한 2022년에는 준거기

관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그 이전의 평균 수납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3년 예산편성시에는 2021년 수납실적과 2022년 예상 수납실적을, 2024년 예산편성시에는 2021년과 2022년 수납실적을 토대로 하였고, 2025년 예산편성시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납실적을 토대로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을 산출하였음.

〈최근 보호위원회 출연금 예산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출연금 예산	기타재산 이자수입 예산	기타재산이자수입 산출 내역	징수결정액	수납액
2021	19,003	-		13	13
2022	27,994	33	준거기관 대비 편성	17	17
2023	33,222	15	(2021년 수납실적, 2022년 예상 수납실적의 합)/2	163	163
2024	33,867	15	(2021년 및 2022년 수납실적의 합)/2	324	324
2025	33,311	64	(2021~2023년 수납실적의 합)/3	(200)	(2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그런데, 2021년 약 190억원 수준이었던 출연금 규모가 2022년 약 280억원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출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액은 출연금의 실집행실적이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대체로 출연금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이자발생액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출연금 증가 부분을 고려하여 반납이자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술적으로 반납이자액을 산정하였음.

- 특히, 2021년은 출연금 규모가 적어 반납이자액이 적었던 해인데, 2021년도 수납실적으로 지속적으로 포함하여 반납이자액을 산정하면서 기타재산이자수입을 과소계상하게 된 것임.
- 또한, 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 편성시에는 이미 2023년 예상 수납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폭증한 것이 예상됨에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 편성 시 과거 실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 수치를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실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기타재산이자수입 규모와 연계되어 있는 출연금 규모 등의 주요 변동 여부를 고려하여 기타재산이자수입 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²⁾: 출연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안 자문료 지급 부적절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사업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법·제도의 개선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며 그 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28억 7,800만원 중 28억 5,200만원(99.1%)이 집행되고, 2,600만원(0.9%)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2,878	-	-	2,878	2,852	-	26	2,573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	578	-	-	578	578	-	-	478
-개인정보보호 국가승인 통계	500	-	-	500	485	-	15	500
-정책성과 공유	185	-	-	185	174	-	11	180
-개인정보보호 교육	835	-	-	935	835	-	-	635
-개인정보보호 정책운영 지원	780	-	-	780	780	-	-	78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검토의견

□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개발 지원사업’은

2)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1031-300)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출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업내용을 보면, 1) 신기술 관련 국내외 동향을 조사하여 신기술 분야 보호기준 등을 마련하고,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이슈 관련 연구용역 및 연구반을 운영하며, 2) 개인정보 신규 이슈 분야 연구반과 정책개발 자문단 운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국내외 입법현황 분석을 통해 신규제도를 발굴 및 설계하고,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발 지원사업 예산편성내역〉

-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개발 지원 : 578백만원
 - 디지털 신기술 환경 이슈 연구 : 257백만원
 - 신기술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 1식x90백만원=90백만원
 -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이슈 연구용역 및 연구반 : 1식x77백만원=77백만원
 -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 제도 정비 및 보호기준 마련 : 1식x90백만원=90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신규제도 발굴 및 설계 : 321백만원
 - 개인정보 법제 개선 연구반 운영 : 220백만원
 - 연구용역 : 1식x50백만원=50백만원
 - 자문단 : 1식x95백만원=95백만원
 - 의견수렴 : 1식x75백만원=75백만원
 - 주요국 개인정보보호 신규정책 및 입법 현황 조사 : 21백만원
 - 번역비(9백만원)+원고비(12백만원)=21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별 가이드라인 정비 : 80백만원
 - 가이드라인 : 2식x40백만원 =80백만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 동 사업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정책연구 실시하거나 신규제도를 설계하는데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임.

○ 그런데 실제 세부집행 내역을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동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음.

- 보호위원회는 동 사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내대리인 규정’,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 검토’ 등의 자문을 받았음.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사업(한국인터넷진흥원) 지출내역 중
법률안 등 관련 자문내역〉**

(단위: 원)

날 짜	사 용 내 역	금 액
2024-2-27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개인정보 보호법 간 정합성에 대한 자문비	300,000
2024-3-19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률안 검토 자문료	300,000
2024-3-2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검토 자문료	600,000
2024-4-2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개인정보 보호법 정합성에 대한 자문비	600,000
2024-4-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관련 검토 자문료	600,000
2024-6-4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내대리인 규정 관련 법률 자문비	300,000
2024-10-2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정합성 검토 회의 자문료	600,000
2024-11-27	디지털 헬스케어법 발의(안) 검토 자문료	900,0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는 보호위원회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직접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타당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을 통해 개정

안에 대한 일회성 자문을 받는 것은 출연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자문을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사업”과 “위원회 법무지원사업”에서 각각 일관된 기준 없이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함.

○ 보호위원회의 타 세부사업인 “위원회 법무지원”사업은 보호위원회의 행정쟁송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용을 지급하고, 고문변호사 인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호위원회의 각 부서는 이 사업을 통해 법률 해석 등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심사되는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고 있음.

-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사업”과 “위원회 법무지원사업”에서 각각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위원회법무지원사업 지출내역 중 법률안 관련 자문내역 일부 발췌〉

(단위: 원)

날짜	사용내역	금액
2024-12-16	법률 자문비용 지급 의뢰(CCTV영상을 경찰 등에게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적용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건) 4건	1,200,000
2024-12-27	법률자문비 지급 (디지털 헬스케어법 법률 자문 건)	1,200,000
2024-12-27	법률 자문비 지급(의료기관 종사자 관련)	900,000
2024-12-27	법률자문비 지급 (주민등록 전산자료 법률자문 건)	900,000
2024-12-27	법률 자문비 지급(자료제출 및 비밀유지 의무)	900,000
2024-12-30	법률 자문비용 지급 의뢰(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 검토 등에 관한 건)	52,8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된 자문은 동 사업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그 외에 법 개정안 등 개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은 위원회 법무지원사업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등 각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일관성 있게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³⁾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⁴⁾ 이른바 “마이데이터” 행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송체계 표준화 등 연계 체계 구축, 마이데이터 관련 정책 연구 및 제도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76억 5,000만원 중 전액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

3) 세부사업: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1032-303)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다.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2. 「지방세기본법」 제86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은 출연받은 금액 중 10억 6,100만원을 이월, 7억 7,600만원을 불용하여 총 58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음(실집행률: 76%).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7,650	-	-	7,650	7,650 (실집행: 5,813)	-	-	6,05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내역사업 2개로 구분되어 전액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되었는데, 내역사업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은 데이터 표준화 연구,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중계인프라 실증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총 5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사업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은 마이데이터 제도·정책 연구, 마이데이터 전문기관 심사·지정 등을 위한 것으로 총 16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4회계연도 내역사업별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	교부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출연기관)			
			이월	불용	실집행	실집행률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5,970	5,970	1,061	260	4,649	77.9%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1,680	1,680	-	516	1,164	69.3%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검토의견

(1) 하위법령 제·개정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 부적정

□ 2023년 3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⁵⁾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⁶⁾ 또는 기타 기준을 충족한 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개정법률 부칙은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요구)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위임함으로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늦어도 공포 후 2년 안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마이데이터의 전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기관을

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6)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란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기업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중계를 지원하거나(중계전문기관), 전송받은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통해 정보주체에게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일반·특수전문기관)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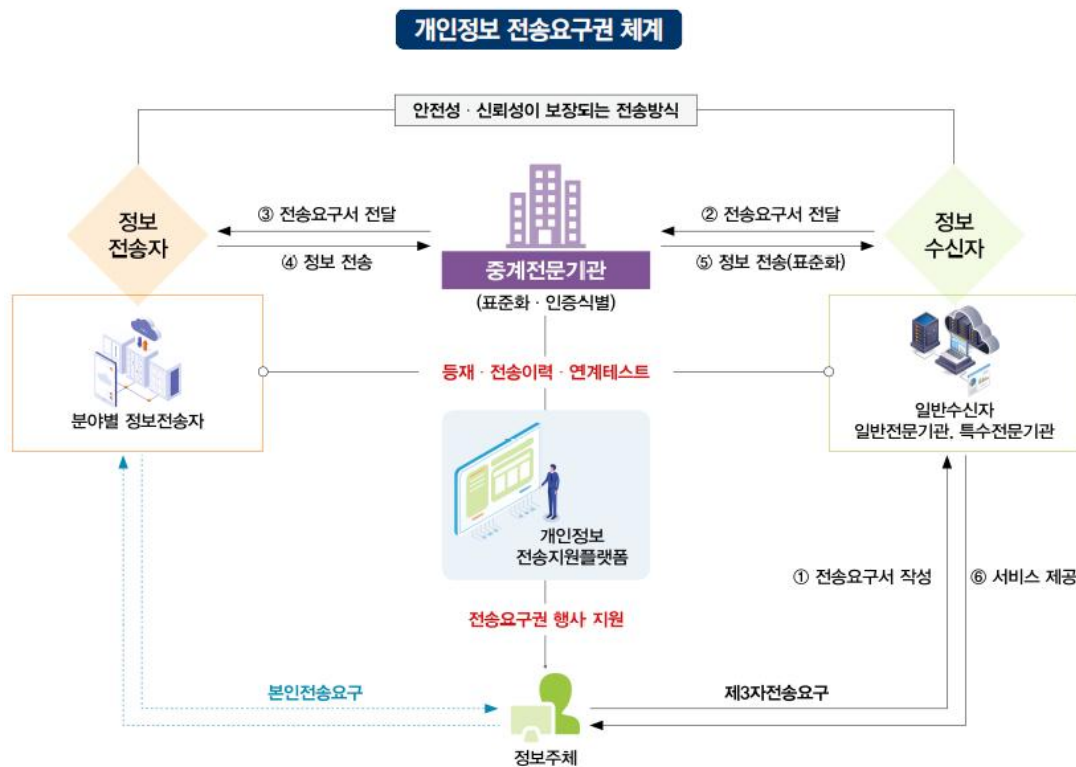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
 2. 일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특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② 중계전문기관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는 안 된다.
- ③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계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정하는 등 사전 준비적 성격의 사업들이 미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음⁷⁾.

- 이후 시행령 개정령⁸⁾의 부칙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일은 2025년 3월 13일로 최종 결정되었고,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개인정보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운영 관련 조항의 시행일은 이에 앞선 2025년 2월 25일로 정해졌음⁹⁾.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운영 체계〉



(자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4.)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1조의2, 제31조, 제35조의3, 제37조의2, 제39조의7, 제60조제5호, 제75조제2항제16호·제20호·제21호·제2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제9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8) 대통령령 제35343호, 2025. 2. 25. 일부개정

9)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정한 전문기관 관련 조항(제35조의3)의 시행일(2024. 3. 13.)보다 지연된 것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유형〉

구분		중계전문기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근거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3, 시·행령 제42조의9 ¹⁰⁾		
업무	근거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	
	내용	전송 중계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기능 제공, 정보전송자 전송 지원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 제외)를 관리·분석하여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분석하여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
전송 대상 정보 ¹¹⁾		-	통신, 에너지	보건의료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를 전송·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
2. 일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특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중계전문기관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③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계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건의료정보전송자”라 한다)
2. 통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통신정보전송자”라 한다)
3. 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정보전송자”라 한다)

□ 이에 보호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내역사업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의 내내역사업 ‘마이데이터 심사제도 운영’ 예산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심사·지정, 정보수신자 안전조치·시설·기술 기준 확인 등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중 마이데이터 운영 관련 지정심사 안내서 마련 용역비 1억 560만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일반수신자 등록 확인제도 운영 용역 선금 3억 1,484만원 등만을 집행하여 실효행률이 49.5%에 불과하였음.

〈2024회계연도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사업 실효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예산	교부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출연기관)			
			이월	불용	실효행	실효행 률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1,680	1,680	-	516	1,164	69.3%
(마이데이터 제도·정책 연구)	700	700	-	-	679	97.0%
(마이데이터 심사제도 운영)	980	980	-	495	485	49.5%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 중 특히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일반수신자 등록 확인 제도 운영’ 용역은 마이데이터 관련 전문기관 지정제도의 핵심으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통합전송(중계)·관리·분석하는 전문기관을 심사·지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용역은 2024년 9월 30일 긴급공고 후 단일응찰로 인해 유찰되어 10월 30일 재공고되었으며, 11월 8일에야 수의계약 형태로 총 7

억 1,7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2월 10일 선금금 3억 1,484만원만이 지급되었음¹²⁾.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일반수신자 등록 확인제도 운영 용역 주요과업〉

구분	과업 주요내용
지정 및 등록 심사지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세부 점검 항목에 따라 기술 수준 및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재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 수행 지원
모의 심사 및 기능 적합성 심사 항목 개발 등	심사 희망 기업·기관 대상 모의 심사 운영, 안정적 서비스 및 사업계획에 따른 서비스 구현 등 확인을 위한 기능적합성 심사 항목 및 취약점 점검 방안 마련
심사위원 구성 및 교육·간담회 등	전문성(개인정보, 정보보호, 정보기술, 회계 등) 검증방안 수립 및 심사위원 풀 구성, 심사 품질 확보를 위한 심사원 교육안 개발 및 운영,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심사제도 설명회 및 제도 홍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또는 일반수신자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제도 홍보를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자료: 나라장터 제안요청서)

- 나아가 해당 용역계약의 주요과업 중 ‘지정 및 등록 심사지원’은 전문기관 심사업무를 수행하되 최종 심사실적¹³⁾에 따라 계약대금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인데, 2024년도 중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 관련 지급액 4억 265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용역계약에 따른 심사목표 및 심사 소요일〉

(단위: 원)

기관	심사목표	심사원	심사일	심사일수	심사 단가
중계전문기관	1개	7인	7일/기관	7일	72,270,639
일반·특수 전문기관	예비심사	5개	7인	1일/기관	51,621,885
	본심사	5개	7인	5일/기관	258,109,425
일반수신자	2개	7인	1일/기관	2일	20,648,754
합 계	13개	-	-	39일	402,650,703

(자료: 나라장터 제안요청서)

12) 2025년 3월 이월금액 10억 6,100만원(용역 잔금)이 지급되었음.

13) 심사일×심사원 기준

- 2025년 8월 7일 기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4월 1개 업체가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고, 8월 중 의료 분야 1개 업체가 추가로 보건복지부의 심사를 거쳐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될 계획이며, 중계전문기관이 지정된 이후 일반·특수전문기관이 지정을 신청할 예정임¹⁴⁾.

□ 동 사업의 집행 부진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조정 과정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심사절차 관련 근거조항이 부재하여 2024년도 전문기관 지정심사제도 운영사업 등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임.

- 보호위원회는 당초에 마이데이터 시행 분야로 의료, 통신, 유통의 3개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24. 5. 1.~6. 10.)하면서 이 중 전문기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즉시¹⁵⁾ 시행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입법예고 이후 기업, 협회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유통 분야를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개진¹⁶⁾되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과정에서 유

14) 2024년 5월 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전문기관 지정 관련 수요조사 결과 총 21개 기업·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15) 다만 이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정한 전문기관 관련 조항(제35조의3)의 시행일(2024. 3. 13.)보다 지연된 것임.

16)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통신판매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정보전송자가 됨에 따라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 대상 분야 임의 선정의 불공정성, 전송 대상기업 및 비대상기업 간 형평성 문제, 영세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우려

(온라인쇼핑협회) 정보전송자-정보수신자 중 일방 당사자에게만 전송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간 협상력의 균형이 파괴될 우려, 오프라인 기업을 정보전송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온오프라인간 형평성 문제, 해외사업자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고, 국내시장 및 기업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상 분야 임의 선정의 불공정성, 유통부문 중 정보전송자 범위를 온라인 쇼핑·대형마

통 분야 제외 후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권고¹⁷⁾됨에 따라 시행령 수정안을 마련(2024. 8. 28.)하여 재입법예고(2024. 12. 16.~12. 23.)한 결과 전문기관 지정 관련 시행령 조항의 시행시점이 계획 대비 지연된 2025년 2월 25일로 결정되었다는 설명임.

□ 그러나 전문기관 지정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신설조항(제35조의3)의 시행일이 당초 2024년 3월 13일이었으므로, 설령 이해관계자의 이견 등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분야에 대한 최종 확정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이미 협의가 완료된 분야(의료, 통신)를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율하는 하위 법령이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음.

○ 개인정보 전송요구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의 제·개정이 지연된 결과 제도 시행일(2025년 3월 13일)까지도 전문기관 지정 실적이 전무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도 보호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된 마이데이터 심사제도 운영 사업의 집행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향후 법률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이 법률의 시행시점에 맞추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트 등으로 제한할 필요성

17) 2024. 8. 9.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권고사항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 전송요구대상 분야로 의료, 기간통신 분야를 우선 시행하고 유통, 부가통신 분야는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

사전준비 및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심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의 과기부 사업과의 차별성 제고 필요

- 내역사업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의 내내역사업인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는 2024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25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에 맞추어 중점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서비스 발굴·상용화를 지원하고 마이데이터 표준을 실증하는 사업임.
- 2024년도 예산은 총 25억원으로 5개 과제에 대하여 과제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 추진이 계획 대비 지연됨에 따라 실제로는 2024년도 12월 선급금 13억 900만원만이 집행되었으며 잔금 10억 6,100만원은 이월되었음(실집행률 52.4%).
- 보호위원회는 동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인해 2024년 8월말 사업계획이 조정¹⁸⁾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024회계연도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예산	교부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출연기관)			
			이월	불용	실 집행	실집행률
마이데이터 산업간 연계체계 구축	5,970	5,970	1,061	260	4,649	77.9%
데이터 형식 표준화 연구	1,000	1,000	-	45	955	95.5%
데이터 전송방식 표준화 연구	1,000	1,000	-	83	917	91.7%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2,500	2,500	1,061	130	1,309	52.4%
마이데이터 전송인프라 실증사업	1,470	1,470	-	2	1,468	99.9%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18) 개인정보 전송요구 대상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견 등으로 인하여 동 사업의 지원 대상 서비스 분야 역시 유통, 의료, 통신에서 유통을 제외한 의료, 통신으로 변경됨.

□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과 사업의 취지, 지원대상과 분야, 지원 방식 등에 있어서의 유사성이 지적된 바 있음¹⁹⁾.

○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출연사업이고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대한 민간 경정보조 사업으로서 사업 시행주체가 상이하고, 전자는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 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반면 후자는 개별 사업자의 수요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사업과제의 대상분야 및 사업 추진방식의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임.

〈보호위원회와 과기부 사업 간 비교〉

구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보호위, 일반회계)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과기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목적	•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시범서비스 개발 및 기술적 인프라 실증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실증을 위한 서비스 개발
법·제도	• 개인정보보호법 -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지능정보화기본법 -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및 제43조(데이터의 유통·활용) ²⁰⁾
서비스 과제 선정	• 마이데이터 중점 추진 부문 중 국민 체감도 등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 과제 선정	• 사업자 수요 중심으로 대상분야 및 과제 선정
데이터 표준	• 데이터 항목, 데이터 형식, 전송방식 표준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개발	• 지원사업마다 개별 기업간 필요한 데이터 연계
사업결과 활용	• 검증된 표준API 공개 등 사업 결과물을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	• 실증사업 참여기업 간 활용
2025년 예산	• 20억원 - 선도서비스 4개 과제×5억원	• 38억원 - 실증서비스 4개 과제×8억원 - 컨설팅 0.3억원×20건=6억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19) 2024년도 예산안 정무위원회 검토보고, 2024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 참조.

2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2조(데이터 관련 시책의 마련) ① 정부는 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지능정보서

□ 먼저, 2024년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은 우선추진분야인 의료·통신 분야와 그 외 자율분야를 대상으로 서비스 실증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3건의 의료 분야 서비스, 1건의 통신 분야 서비스 및 1건의 자율 분야(여행) 서비스를 선정(총 5건)하였고, 2025년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은 의료·통신 분야 신규 서비스 및 그 외 분야 고도화 서비스 실증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5건의 의료·통신 분야 서비스를 선정하였음.

비스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데이터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2.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
 3.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유통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
 5. 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제고
 6.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데이터 전문기업 육성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한 재원의 확보
 8.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수집 및 유통·활용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제43조(데이터의 유통·활용) ① 정부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산·수집·관리와 원활한 유통·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원활한 유통과 활용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생산·수집 또는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
 2.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3. 국가 경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4.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
- ③ 제2항 각 호의 데이터의 생산·수집·유통·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데이터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기능·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2025년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과제 선정현황〉

연도	분야	내용
2024	의료	마이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이환 예방·관리 서비스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해외 의료지원서비스
		건강정보고속도로를 활용한 똑똑한 약물 비서 서비스
	통신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제공서비스
	자율	마이데이터로 떠나는 여행 지원 서비스
2025	의료	보호자 열람 기반 고령자·미성년자 의료마이데이터 관리 및 위험행위 예방 서비스
		정신건강 모니터링 및 약물 복용을 도와주는 AI 헬스케어 서비스
		의료마이데이터 기반 초개인화된 AI 홈닥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지표 기반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
	의료·통신	의료·통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전국민·소상공인 대상 정책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은 2024년도 의료·통신·자율 분야를 대상으로, 2025년도 의료·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는데 선정된 과제 대부분이 의료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또한 서비스 개발주체에 따른 전송대상정보의 범위, 세부기능 및 고도화 수준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으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위험 예측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 보호위원회와 과기부의 사업 과제간 주요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 과제 선정현황〉

연도	분야	내용
2019	의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지갑서비스
		건강식단 정보제공 및 실손의료비 보험금 간편신청 서비스
	금융	빅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추천
	에너지	에너지 수급 예측 및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통	소상공인 경영 개선 기능 제공
		소상공인 문서 자금 플랫폼
	학술	강연, 기고 등 필요한 기관과 매칭
2020	의료	의료 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의료 데이터 현황 확인 및 생활습관 관리 등 홈케어 서비스
		금융현황 관리
	금융	생활 데이터 연동 및 데이터 거래
		공유차량/자전거/킥보드 대여 및 교통카드 연계 결제 등 원스톱 제공
	교통	공공교통수단 안심이용
	생활	직장인 생활밀착 서비스 제공
2021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및 상가가치 통계 정보 제공
		만성콩팥병 관련 맞춤형 서비스
		의료진 등에게 환자 데이터 제공
	의료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병역정보 등 활용한 간편결제 및 맞춤 할인 제공
	공공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행정처리 간편 제공
		소비자 맞춤형 상권분석, 가격변화추이, 포인트 제공
2022	소비·금융·교통	소득정보 통합관리
		안심대리운전 서비스 개발
		수출입기업 마이데이터 종합관리 플랫폼 구축
	서비스 개발	개인이 중심이 되는 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이데이터 오픈레이터 플랫폼 개발
		종이없는 비대면 원서접수 플랫폼 구축
		마이데이터 기반의 건강정보를 연계한 보험정보 관리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의 건강정보를 연계한 보험정보 관리 서비스
2023	고도화 지원	개인데이터 자산화를 위한 마이디 라이프로그 서비스
		정보주체 중심의 통합 의료데이터의 암호화 상태 안전 활용 시스템 개발
		MILIPASS 행복한 육군가족을 위한 나의 현역정보 활용 지원 서비스
	종합관리 플랫폼	배출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마이데이터 기반 수집·활용 플랫폼
		의료 재활 마이데이터 오픈레이터 플랫폼
		커뮤니티 기반 개인데이터 중계 서비스 플랫폼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2024	활용서비스	동형암호 마이데이터 기반 백신 부작용 알림 서비스
		원클릭 내차 종합 리포트 생성 및 유통지원 서비스
	생활 밀착형	부동산 임대차 안심거래 지원서비스
		건강부채 예측 및 식단, 운동 등 건강미션 제공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형	원채널 시험인증 정보 관리 및 유통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암케어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암케어 서비스
2025	커뮤니티	만성질환 커뮤니티 활용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커뮤니티 기반의 청소년 진로·진학 설계 지원 서비스
	일반	마이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AI 경영관리 서비스
		기업 마이데이터 활용 중소기업 정책금융 매칭 서비스
		동형암호 기반 소상공인 신용평가 및 맞춤형 금융상품 연계 서비스

주) 음영표시: 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선정과제와 주요기능이 유사한 과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 다음으로, 과기부의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에서 공통의 데이터 표준 없이 실증사업마다 개별 기업간 필요 데이터를 연계하는 것과 달리, 보호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은 중점추진 분야별로 다수의 법정 정보전송자²¹⁾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대하여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2024년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의 경우 의료·통신 분야가 아닌 자율 분야 역시 공모대상 분야²²⁾로 정하고 있어 여행 관련 서비스²³⁾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여행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요구 대상 정보가 아니어서 서비스 사업자가 법정 정보전송자로부터 데이터 표준이 적용된 정보를 일괄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2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보건의료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나.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 등 조제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수집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2. 통신정보전송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이용정보, 이용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통신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통신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3. 에너지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에너지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에너지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전기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도시가스 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

22) 과제 5건 중 의료, 통신, 자율 분야 각 1건씩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2건은 분야와 무관하게 고득점순으로 선정

23) 마이데이터로 떠나는 여행 지원 서비스

○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개인정보 전송요구대상 분야를 유통, 의료, 통신 3개 분야로 전제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유통 분야를 제외해달라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유통 분야를 개인정보 전송요구대상 분야에서 제외하면서 사업계획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과기부의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사업과의 차별성을 유지하고 보호위원회 중점 추진분야의 육성에 집중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상 개인정보 전송요구대상 정보에 포함된 의료, 통신 분야로 제한하여 선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적절했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향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기부 사업과의 차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심사·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확대²⁴⁾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4) 참고로 2025년 8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상 ‘에너지’ 분야가 전송요구 대상으로 규정(시행일: 2026. 6. 1.) 되었으나 하위 고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보호위원회는 2026년에 전송요구 분야를 에너지·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건의료정보전송자”라 한다)
2. 통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통신정보전송자”라 한다)
3. 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정보전송자”라 한다)

4. 개인정보 침해방지²⁵⁾: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통합 발주시 비목별 집행실적 반영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개인정보 침해방지”사업은 개인정보 유출·침해신고 등에 따른 사실 조사 및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 침해신고센터 운영,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및 삭제 등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94억 1,200만원 중 93억 5,300만원(99.4%)이 집행되고, 5,900만원(0.6%)은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개인정보 침해방지	8,686	726	-	9,412	9,353	-	59	7,486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5,164	726	-	5,890	5,831	-	59	4,064
개인정보노출및불법유통대응	3,492	-	-	3,492	3,492	-	-	3,392
개인정보 침해방지 지원	30	-	-	30	30	-	-	3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 세부사업: 개인정보 침해방지(2034-301)

2) 검토의견

□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 사건 발생에 따른 신고, 조사, 처분 등 사건처리 데이터가 상호 연결되는 디지털 사건처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차에 걸쳐 나누어 진행되고 있음.

○ 제1차 시스템 구축사업은 과업수행 단계에서 계약자의 귀책사유²⁶⁾로 인해 인해 기한 내(2023. 4. 5.~2023. 12. 31.)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2023년도 이월액 7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 5월 8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계약자에게는 사업지연에 대한 배상으로 지체상금(3억 3,500만원)이 부과되었음²⁷⁾.

○ 2024년에는 1차 시스템 운영(관리용역비, 210-15목)과 2차 시스템 구축사업(일반연구비, 260-01목)이 추진되었으며, 두 사업은 통합 발주되어 계약이 진행되었으며, 보호위원회는 통합 추진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모두 2차 구축사업(일반연구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음.

26) 과업 도중 계약자의 귀책으로 프로젝트매니저, 총괄 프로젝트 리더 등 주요 인력 8명에 대한 인력교체가 발생(2023. 6. 23.)하여 업무분석 및 설계에 상당한 추가시간이 소요되었고, 조달청 입찰을 통한 기술평가 결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경험부족 등에 따른 낮은 업무이해도로 인한 빈번한 시스템 오개발 및 재개발이 발생함.

27) 지체상금은 따로 납부받지 않고 계약대상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처리하여 “위약금(57-572)” 수입으로 반영하였음.

〈2024년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 집행 내역〉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관리용역비 (210-15)	300	300	1차 시스템 운영
일반연구비 (260-01)	(구축)954	935	2차 시스템구축사업
	(감리)132	106	2차 시스템구축사업 감리
자산취득비 (430-01)	389	376	
합 계	1,775	1,717	

주: 굵은선 부분은 통합 발주·계약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정보시스템 운영과 구축사업이 사실상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은 사업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부분이 있음.

○ 다만, 각 비목의 목적과 집행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분리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통합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각 비목별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비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임.

□ 따라서 보호위원회는 비목을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을 특정 비목에 일괄하여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²⁸⁾.

28) 일반연구비와 관리용역비를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한 특허청의 '전통지식 DB구축 및 검색시스템 운영위탁사업'은 각 비목별로 나누어 집행실적을 반영하였음.

5. 위원회 법무지원²⁹⁾: 예산 소진 목적의 연말 예산 집행 지양 필요

1) 사업 및 결산 개요

- “위원회 법무지원” 사업은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쟁송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용과 개인정보보호 분야 법·가이드라인 해석 등을 위한 법률 자문 및 판례 등 해석자료 활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5억 1,500만원 중 4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위원회 법무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위원회 법무지원	515	-	-	515	487	-	28	485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 사업은 과태료·과징금 등 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피처분자의 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 비용을 지원하는 내역사업 ‘국가송무수행지원’과 개인정보보호 분야 법·가이드라인 해석 등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고문변호사 인력풀 운영, 법률포탈 사이트를 통하여 판례 및 법률해석자료 활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역사업 ‘법률서비스이용지원’으로 구분됨.

29) 세부사업: 위원회 법무지원(7041-301)

2)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내역사업 ‘국가송무수행지원’과 ‘법률서비스이용지원’으로 구분되는데,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당시 보호위원회 관련 법적 분쟁 증가에 따라 소송수행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역사업 ‘국가송무수행지원’의 예산이 2억 2,000만원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총 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2024회계연도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소송 수행 관련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송무수행지원 사업 집행률은 확정예산 기준 79.5%에 불과하였고, 대신 다른 내역사업인 ‘법률서비스이용지원’ 사업에서 초과집행이 이루어졌음.

〈2024회계연도 위원회 법무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내내역사업)	정부안	확정예산	불용	집행	집행률
위원회 법무지원	295	515 (국회증액 +220)	28	487	94.6%
① 국가송무수행지원	200	420 (국회증액 +220)	86	334	79.5%
② 법률서비스이용지원	95	95	(초과집행 +58)	153	161.1%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80	80	(초과집행 +13)	93	116.3%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료	15	15	(초과집행 +45)	60	4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자료 재구성)

- 법률서비스이용지원 사업은 법률 자문료 및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 지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바 해당 예산을 광범위하게 국가 소송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볼 소지도 있겠으나, 현행 사업체계상 내역사업별 산출근거가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에서 법률자문이나 법률정보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증액 소요가 있었다면 국회 증액시 이를 해당 내역사업에 반영하여 의결하였어야 함.

〈2024년도 위원회 법무지원 사업 예산편성근거〉

내역사업	편성 근거
국가송무수행지원	○ 국가소송수행 : 420백만원 ① 세부산출 : 13건 x 32,307천원 = 420백만원
법률서비스 이용지원	○ 법률서비스 이용지원 : 95백만원 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 80백만원 · 세부산출 : 1건 x 400천원 x 3인 x 66회 = 80백만원 ② 법률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료 : 15백만원 · 세부산출 : 12개월 x 1,250천원 = 15백만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나아가, 법률서비스 이용지원 사업의 집행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법률자문료 및 법률정보시스템 이용료 지급이 12월에 이루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음.

〈2024년도 법률자문료 집행현황〉

구분	지출금액(원)	(비중)	자문건수(건)	(비중)
1월	-	0%	-	0%
2월	4,500,000	4.8%	15	10%
3월	3,300,000	3.5%	11	8%
4월	1,773,600	1.9%	6	4%
5월	926,400	1.0%	3	2%
6월	1,500,000	1.6%	5	3%
7월	1,200,000	1.3%	3	2%
8월	900,000	1.0%	3	2%
9월	2,973,600	3.2%	10	7%
10월	1,276,400	1.4%	4	3%
11월	4,500,000	4.8%	13	9%
12월	70,535,600	75.5%	73	50%
합계	22,850,000	100%	146	1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2024년도 법률정보시스템 이용료 집행현황〉

자금이체일	지출금액(원)	이용업체
2024-05-02	14,276,900	로○○
2024-12-13	2,000,000	엘○○
2024-12-13	2,000,000	엘○○
2024-12-13	2,000,000	엘○○
2024-12-13	3,000,000	엘○○
2024-12-13	3,000,000	엘○○
2024-12-13	3,000,000	엘○○
2024-12-13	1,000,000	엘○○
2024-12-17	4,000,000	엘○○
2024-12-20	5,060,000	렉○○○○○
2024-12-20	7,590,000	렉○○○○○
2024-12-20	5,060,000	렉○○○○○
2024-12-20	5,060,000	렉○○○○○
2024-12-20	2,530,000	렉○○○○○
합계	59,576,9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호위원회의 법률자문 소요가 반드시 연말에 집중되어야 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연간 총 지출금액의 75.5%를 집행한 것은 세부사업 내 타 내역사업인 국가송무수행지원 사업 예산의 연말 기준 불용이 크게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보호위원회는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하여 연말에 법률자문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법률정보서비스 이용의 경우 예년에는 연간 1,300~1,400만원 규모의 이용계약 1건만 체결³⁰⁾하였던 것과 달리 2024년도에는 5월에 체결한 1,427만원 규모의 계약 1건 외에 12월에 다수의 추가적인 계약체결(4,530만원 규모)이 이루어진 바, 이 역시 동 사업의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하여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에 없었던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 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는 당초 2024년도 말에 예정된 구글·메타 과징금처분취소소송 등 주요 소송에 대비하여 법률자문 등의 집행시기 및 횟수 등을 조율하던 가운데, 주요 소송의 판결이 차년도로 미뤄짐³¹⁾에 따라 그간 집행하지 못했던 법률자문 등을 연말 집행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23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³²⁾되는 등 향후 행정처분 관련 보호위원회의 소송 수

30) 2022년도 4월 1건(1,320만원), 2023년도 7월 1건(1,386만원)

31) 구글·메타 관련 소송은 2025년 8월 현재 2심 진행중임.

행 소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보호위원회는 향후 소요 예산 규모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하고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 3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 9. 15. 시행) 주요내용: 과징금 상한액 기준 및 처분대상 확대
 - (개정前)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개정後)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7.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의9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